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3. 12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발의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3. 12.)

2. 제정이유

-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, 여가·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및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5조)
-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(안 제6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
- 비용추계서: 필요시 예산 조치
- 입법예고(2024. 2. 28. ~ 3. 8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제출된 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및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및 제20조(교육)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,
 - 안 제4조에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에 따른 평생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,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 -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과 일상·사회·직업·여가·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